제89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(강화) ○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을 받기 위해 컨테이너 소유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및 구체화 – 점검 방법·범위·점검기준, 점검 빈도, 점검 인원의 자격 기준, 문서 유지 시스템, 식별번호 기록·현행화 시스템 등 ▶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4조	1.비중요
2	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기준(신설) ○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할 사항*을 구체적으로 규정 * ▲컨테이너 주요부의 길이, 크기 및 재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, ▲컨테이너 형식, 자체질량 또는 최대총질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▶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8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(차액결제거래) 포함 등(신설) ○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며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는 등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하는 한편, 개인전문투자자 관련 보호장치 강화 ▶금융투자업규정 제4-20조, 제5-49조의2, 제5-49조의3	1.비중요
4	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영업 일부폐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마련(신설) ○ 은행이 영업의 일부폐업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(중요한 일부)을 구체화(자산액 또는 총이익 기준 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) ▶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9	1.비중요
5	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(신설) ○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규정 -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, 인증업무준칙 정보, 인증서 폐지목록 정보 등 인증서의 유효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고 등 ▶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인증기관 운영실태 확인(신설) ㅇ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, – 인증기관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조치결과 통보, 인증서 관련 연간 운영현황 등을 국토부에 매년 통보하도록 규정 ▶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0조 3.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인증기관의 통보 의무 등(신설) ㅇ 자율협력주행 인증용 알고리즘의 취약성 인지 시 지체 없이 이를 관련 기관(인증협의회, 국가정보원, 인증관리센터)에 통보하고,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가입자 인증서를 모두 폐지 ㅇ 인증기관과 인증관리센터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,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▶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2조 4.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시설기준과 정보의 관리방법(신설) ㅇ 자율협력주행 인증·검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·장비의 세부 기준, 시설·장비·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등의 관리방법을 정함 ▶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20조, 제21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개정안 (산림청)	1.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추가(신설) ㅇ 숲경영체험림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– (경관) 환경파괴정도, 불쾌인자, 상층목수령, 생육상태 – (위치) 접근도로폭, 인접도시와 거리지수, 대중교통이용편의성 – (휴양유발) 휴양기회의 다양성, 개발전 이용수준 – (개발여건) 시설가능면적, 토지소유권, 토지이용 제한요인, 예상재해위험도, 예상개발비, 주차장확보 – (숲경영체험여건)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실적, 숲경영체험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ㅇ 숲경영체험림 대상지에 대한 적지판정 기준 마련 – 57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성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 ▶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제6조	1.비중요
7	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농업기계의 신고 등(신설) ㅇ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 제원신고, 농업기계의 판매신고,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▶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2. 농업기계 폐기 등(신설) ㅇ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게의 범위, 농업기계 폐기 금지 요건, 농업기계 폐기 신고내용 규정 ▶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등(신설) ㅇ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 및 환경오염 물질의 최소한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 지정기준(시설, 인력 등 기준) 규정 ▶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4.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등(신설) ㅇ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규정 ▶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5.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(신설) ㅇ 농업기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서면계약서의 내용, 하자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구조 및 장치 등을 규정 ▶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	
8	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시설·관리기준 마련(신설) ㅇ (시설기준) 이용시설을 공통 시설과 용도별 시설을 규정하고 그 밖에 설치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사항* 등을 규정 * 충분한 용량 확보, 청소 등에 용이한 구조, 수질 확보 시설·예비펌프·계측장치 등 설치, 안내문 등 ㅇ (관리기준)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* 규정 * 청소 등 점검 주기(연 2회), 외부 이물질 유입 방지, 적정 수질 확인·유지, 기록 및 도면 보관 등 ▶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국외 이전 대상국 인정 및 중지 명령 기준 등(신설) ㅇ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중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, 제29조의12 2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기준 등(신설) ㅇ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 · 규모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· 규모, 처리 근거 및 형태 ·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시 고려사항 규정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, 명확성, 접근성 등에 대한 평가 수행시 고려사항 등 마련 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, 제31조의3 3.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(강화)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취소 사유* 추가 규정 *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,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4.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(신설) ㅇ 개선권고, 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의 부과,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대해 공표 내용, 횟수 등을 정해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 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1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 시험공고 공고일 기한 단축사유(강화) ○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일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한 국가적 현안 수행(예: 감염병 유행) 등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 ▶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Ⅱ-1-파-(2)-(나)	1.비중요
11	위험기계 · 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명확화(강화) ○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제작 · 안전기준*을 마련하고, 점검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천장주행크레인, 갠트리크레인 및 언로더의 범위를 정격하중 2톤 이상으로 확대 * 작업대 네 개의 모서리에 과상승방지장치(수직형)를 모두 설치하거나, 작업자가 끼이는 경우 압력을 감지하는 안전바(수평형)를 설치 ▶ 위험기계 · 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, 제17조	1.비중요
12	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0.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(강화) ○ 적재하중 0.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리프트 설치 후 최초 3년이내,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 부과 ▶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	1.비중요